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서론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17조(사생활, 주거, 가정, 주거, 통신,의 비밀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형법

재판절차의 권리

표현의 자유

아동의 권리

생명권

— 형식의 종이

- 전부비고지
- 낌별요지
- 사례. <법률의 근거>.
- 전부비고지 이후 상황.

To : 박찬운 변호사님

서론쓰기가 무척 힘드네요. 검토후 수정해서 번역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감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내 머리는 정지되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I 개요

반박보고서의 목적

1. 이 보고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작성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1997.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이다. 민변은 현재 대한민국내의 약30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민간인권단체로서 1988년에 창립된 이래 한국내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민변은 1992. 7. 개최되었던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의 심의 당시에 한국기독교협의회와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91.7 개정

2. 우리는 인권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이 대한민국 내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신장되는데 기여하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반박보고서는 심의과정에서 인권이사회와 대한민국정부 사이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가급적 실제 규약이 실현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가 기술하고 있다고 밝힌 시기(최초보고서 제출 이후 5년간)의 인권상황은 물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인권상황까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함으로써 업데이트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총괄적 평가

3. 정부보고서는 최초보고서 제출이후 한국에서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행한 변화와 개혁조치를 각 조항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인권보장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다.

4. 그러나 정부의 보고서는 많은 부분에서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하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보고서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권 침해사례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예컨대 인권이사회는 최초보고서심의시에 한국에서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과,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

는 위 권고에 상응하는 법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최초 보고서 심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이사회가 지적 한 위 사항들에 대하여 규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 및 실제의 인권상황 등에 관하여 관련판례나 통계수치 등을 통하여 자세한 기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그 렇지 못하다.

6. 즉 정부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하여 기타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에 열거된 권리가 실현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보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약실시의 주요한 장애요인

7. 한반도는 1945. 8. 15. 이래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으로 분단되어 오고 있다. 그 동안 남북한 양 정부는 각각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상황하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1961.5. 16.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박정희정권은 이후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모든 반대세력을 강압으로 누르고 인권을 무시하고, 재벌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펴며 무려 18년간이나 계속하여 집권하였다. 1979. 10. 26. 박정희가 사망하자 다시 전두환, 노태우 등이 1979. 12. 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어서 1980. 5.에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한 후 폭압적인 통치를 이어 나갔고, 한국의 인권상황은 열악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8. 한편 1993. 2. 군 출신이 아닌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소위 문민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한국에서의 인권신장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군부통치는 막을 내렸다. 문민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국민은 과거청산 및 사회 각 부문에 있어서의 민주화 및 인권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은 과거 군사정권의 실세들인들과 연합하여 만든 신한국당을 기반으로 정권을 획득한 관계로 과거 군사정권의 속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후 1997. 12.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한국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특히 김대중은 선거공약에서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함으로써 한국에서 보다 철저한 규약이행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어졌다. 그러나 문민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여를 돌이켜 평가하건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한국에서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로 지적 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온존하고 있다.

9. 소위 문민정부 및 현 정부 하에서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와 장애는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이다. 1991년 10월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992년 2월 18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한국정부는 헌법 제3조,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1994. 7. 8.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남한의 많은 재야단체가 민족의 화합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조문사절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정부는 김일성 주석을 한국전쟁의 전범이라고 규정하며 조문주장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조문을 주장하는 이들을 처벌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남북관계는 고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대북 강경 정책 기조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 처벌함으로써 규약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해 왔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소위 헛별정책이라 불리우는 유화정책을 편으로써 이전보다 대북한 관계를 호전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일반 경찰이 아닌 비밀경찰(국가안전기획부 (최근 들어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함),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아 하는데,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는 특히 고문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어, 인권보장의 장애요소로 되고 있다.

10. 과거 군사정권하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 또한 규약 이행의 장애요소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온 국민은 군사쿠데타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 및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반인권적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우선 12. 12. 쿠데타와 5. 18. 광주 학살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들은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 주모자들을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1994. 10. 12. 12.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어서 1995. 7. 18.에는 5. 18. 사건에 대하여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회괴한 논리를 내세워 “공소권 없음”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 그러자 정부는 뒤늦게나마 쿠데타 주모자들을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1997. 4. 17. 대법원이 전두환에 대하여 무기징역, 노태우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함으로써 쿠데타 주모자들에 대한 일단의 단죄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1997. 12. 22. 대법원 선고가 있은지 불과 8개월만에 쿠데타 주모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고 이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줌으로써 결국 불철저한 과거청산으로 끝나고 말았다.

11. 또한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의문사, 실종, 고문 등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하여는 그 진상조사를 하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는 물론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인권침해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또는 교도관에 의해 고문 내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면서 법집행 담당공무원들을 고소, 고발하였음에도 정부는 이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나, 기소에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어쩌다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죄보다 오히려 가볍게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법집행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도 별 문제 가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하였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가 의결까지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간기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안을 내놓았는데,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하였고,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를 명목적인 기구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의 수수가 되어야,

12. 나아가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테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제정 내지 개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많은 법률들은 야당이 참여를 배제한 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들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법률들은 인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률들 및 국가권력의 조직과 행사에 관한 법률들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부나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호한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장애요소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13.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권획득과 정권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와 아울러 경제성장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한국내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으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펼치는 노동운동은 공산주의적인 것 내지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되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반 노동관계 법률 등에 의하여 탄압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군사정권 이후 들어선 소위 문민정부 및 현 정부 하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한국은 1998년 말 외환위기를 맞게되어 IMF의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통한 대량 실업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여 파업 등으로 맞서자 정부는 경찰력에 의존하여 이들을 대량으로 구속하고 있다.

14. **인권교육의 부재에 기인하는 법집행 담당공무원 내지 일반국민의 인권의식의 부족현상** 또한 **인권규약의 실시에 있어서의 장애요소이다.** 전술한 것처럼 그 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통치가 계속됨에 따라 법집행 담당공무원들에게서 인권의식의 매우 일천한 수준이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인권을 지키고 나아가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은 정권에 대한 반대로 간주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가혹한 처벌까지 받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사정권이 물러난 마당에,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교과과정에 인권관련 과목을 포함시킨다거나 규약을 홍보하는 등 적절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정부보고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제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 규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의하여 비준 공포되었으므로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한편 [규약비준전에 제정된 법률과 규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며, 나아가 규약비준후에 제정된 법률과 규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여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법률은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만일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 입법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96.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에서 국내법과 고문방지규약이 상충할 때에는 신법우선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보고서의 기술만으로는 국내법과 규약이 상충하는 경우에 규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법우선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정부보고서는 [개인이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규약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토대로 판결을 하고, 규약 내용과 상응하는 국내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규약의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직접 원용될 것이다.]라고 한다. 즉, 규약의 모든 규정은 한국내에서 자기집행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 규약규정이 자기집행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금호기업 전노조위원장이었던 손종규는 1991. 2. 대우조선과업당시 전국대기업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하여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문제되어 구속된 후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제3자개입금지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9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손씨는 1992. 7.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에 제소하였는데 (1992.7.7. 통보(communication) No.518/1992) 이에 대해 인권이사회는 1995. 8. 3. 손종규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에서 손종규의 처벌은 규약 19조 2항의 위반이고, 손종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데 대하여 규약 제2조 3(b)항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후 한국정부는 손종규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손종규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2

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노동쟁의법 제13조의 2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를 처벌한 것은 국제규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규약의 내용을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 등 법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 역시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2년의 연수를 마치면 판·검사 내지 변호사로 일하게 될 예비법조인에 대한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에 1997. 부터 규약의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국제인권법 강의가 처음으로 개설되었으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극히 일부의 사법연수생만이 수강을 하였고, 그나마 1998년에는 수강신청인원이 극히 적다는 이유로 폐강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법원은 실제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규약을 직접 적용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의 사건은 한국법원이 규약규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박태훈은 한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인의 지위향상과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재미한국청년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그 후 그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귀국하였다가 이적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징역 1년, 집행유예 ..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89년 12월 22일 선고 89고합1221판결) 이후 박태훈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 사건은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되었고, 동법원은 1993. 5. 11.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박씨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1993. 12. 24.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규약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했던 최초의 보고서 심의후에 발표한 인권이사회의 권고문에서 국가보안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이 인권이사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도, 대법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따라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거나 형편을 잃고 모순되는 법적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였다.

주목할 것은 위 박태훈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1995. 8. 8. 인권이사회에 자신에 대한 유죄선고가 규약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2항 및 제26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하였는데(1995. 8. 8. 통보(communication) No.628/1995), 인권이사회는 1998. 10. 20. 박태훈에 대한 유죄선고는 규약 제19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한국정부는 박씨에게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권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위 손종규 사건과 같이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바, 결론적으로 규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정부와 법원 차원의 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스터디 / 영상수의미

PAK. Oba. Inday. 1991년 10월 10일
국회사법부에서 입법 사항.

국가보안법 ~~국제방위법~~은 통과되었거나 입법되었다.

통계 - 자료제공

2002년 6월. 그동안 시민에게 해방.

정부보고서는 규약 제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권보장을 위한 선언규정을 신설하고(제1조 제2항),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추가된 요건 자체가 극히 모호하여 실제로 이후의 국가보안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개정 요건은 장식적인 문구로 전락하였다.

다음의 통계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후에도 그 개정과 무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305 122 367 246

(이상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보안법, 반공법 기소인원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국보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04	312	414	357	342	136	403	226	413	633
반공법	136	65	13	-	3	2	5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0~1997

* 반공법은 80년 12월 30일, 폐지되었다. 이후의 기소인원은 구반공법이 적용된 경우이다.

국가보안법사건 재판 처리결과표 (전국 1심법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접수 446 265 403 226 413 633

(전년미제104건) (전년미제129건)

(본년접수342건) (본년접수136건)

처리 317 220 317 212 327 552

실형 138 92 93 59 98 176

집행유예	162	120	217	146	176	324
무죄	1		2	3	7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2~1997)

한편 정부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은 이미 최초보고서의 검토(1992. 7.)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최초보고서 검토 당시에 인권이사회 각 위원들은 이미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인권이사회는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하여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1995. 6. 한국을 방문한 후 1995. 11. 21.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방문보고서(E/CN.4/1996/39/Add.1)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인권이사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 정의한 후(법2조). 동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단체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이나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모두 모호한 개념이다. 특히 국가변란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내란죄의 경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며 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경우는 단순히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아야 20-30인 정도로 구성된 결사가 반국가단체로 되는 일이 많아 왔다.

그 동안 판례상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영남위원회, 새정교, 남북국민대회
반국가단체 → 이자단체

한국은 헌법 제4조에서 평화통일을 천명함으로써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1991. 10.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고, 1992. 2. 18.에는 “남북사이

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남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나아가 3. 20.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서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였다. 남북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제1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아니하고(3조),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1953. 7. 27.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에 정해진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상호불가침을 약속하고 있다.(9조, 11조) 따라서 북한을 아직까지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반국가단체에 관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에 관한 조항과 함께 규약 제18조 사상의 자유, 제19조 표현의 자유, 제22조의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국가보안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약50개의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사형까지 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밀이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계속해서 군사상 기밀 내지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하여 왔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 1148판결 등)

그리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황석영은 1993년, 1989년에 북한을 방문하여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신원정보 및 국내운동권 동향에 관하여 말하고 또한 남한에는 1천여개의 핵이 배치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위 혐의사실 중 전자의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후자의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994. 2. 21. [전자의 정보는 북한에 이로운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하였고, 후자의 정보는 외신과 국내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정보의 내용도 핵문제 전문가가 아닌 황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국가기밀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4.2.21. 선고 93노3764) 그러나 대법원은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임을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1994.5.24. 선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위 혐의 사실 모두에 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7. 1. 16.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국가기밀의 의미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그 견해를 밝힌 바 있고 (1997. 1. 16. 선고 92헌바 6 26, 93헌바 34, 35, 36(병합)), 이어서 대법원도 1997. 7. 16.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국가기밀)은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어야만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 동안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 이후에도 “남한의 미전향 장기수들의 인적사항, 수감교도소, 복역 실태, 생활실태 등”이 국가기밀이라 하였고, (1997. 9. 9. 97도 656), 나아가 “합법적 대중조직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재야단체의 구성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의 구체적인 주장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과제, 재야인사들의 구체적 동향,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의장들의 이름, 범민족연합의 95년 사업계획(안)” 또한 국가기밀이라 함으로써 (대법원 1997. 11. 20. 97도 2021), 아직까지도 국가기밀에 관한 과거의 해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제6조 탈출, 잠입

국가보안법 제6조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잠입, 탈출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에 의하면 이 조항은 간첩이 침투하여 기밀탐지, 수집이나 테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 잠복하거나 지하당의 구축 등을 임무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북한방문을 한 인사들의 처벌조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사의 방북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이를 방북행위를 처벌하려다 보니 법원은 탈출이란 북한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말하며 잠입은 북한지역에서 남한으로 오는 것은 물론 그 밖의 곳에서 남한으로 오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며, 그 방법은 은밀한 것은 물론 공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고 문익환목사의 부인인 박용길 장로 (76세)가 1995.6.28. 단지 김일성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1995. 7. 31. 판문점을 통해 공개적으로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로 처벌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1998년 8월 27일, 방북중 북한측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 소속 문규현(전주 서학동성당)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문규현 신부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 미사' 집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 사제단 신부 9명과 방북 대표단을 구성하여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북한 방문과정에서 북측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전권위임을 받고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지 않으면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문 신부는 "사제로서 북녘의 신도들을 저버릴 수 없다는 고뇌와 양심의 소리 때문에 북한쪽 제의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제단 방북 대표단은 방북 일정을 하루 앞당겨 17일 서울에 도착, '북한 방문 결과 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으며 문규현 신부는 통일대축전에서 연설한 연설문 전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규현 신부가 8월 11일 방북 이전, 통일부의 방북 승인조건(8·15통일축전 등 북측에서 개최하는 정치적 행사 참가금지, 정치적 사안의 논의 및 성명문 등 채택 금지 등)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1998년 8월 11일, 평양 도착후 도착성명을 통해 8·15 통일대축전을 찬양하고 금수산 기념관을 방문하여 김일성 시신앞에서 참배하고 방명록에 김일성을 미화, 칭송하는 글을 기재하고 8·15 통일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판문각에서 축전의 개최를 축하하는 내용의 연설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여,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제단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방북한 문신부에 대해 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확대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일축전 참가 연설을 살펴보면 문 신부는 연설서두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비원을 말하면서 남북의 화해를 갈망하는 남북 민중의 열망을 우선하지 않는 남과 북의 정부 책임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법원은 심지어 외국인이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와 제3국에서 거주하다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모두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입, 탈출의 해석은 문리적 의미를 뛰어 넘는 해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다.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까지 과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지령과 협의에 따른 구체적 행위에 나아가지도 않은 잠입, 탈출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간첩 행위를 하지도 않고 단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이유만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령이란 것이 매우 모호한 개념인 바, 법원은 지령이라 함은 지휘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고,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한다.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

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름계 한 자, 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이적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1996. 10.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3항, 5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 헌가 113 결정등의 취지를 받아 들인 것으로서 구법규정보다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구법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 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구성원”, “활동”, “동조”등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일부 개념도 위와 같이 신설된 주관적 구성요건을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판시한 견해와 같이 제한해석한다면 이를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된다. 따라서 위 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3항, 제5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95헌가 2 전원재판부)

그러나 이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 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별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다. 특히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조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이름계한 자라고 하는데 반국가단체가 불명확할뿐더러 반국가단체를 이름계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이적단체 조항의 남용(제3항)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관한 조문의 모호성 내지 광범위성으로 인해, 북한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하거나, 북한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입장에 취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반정부활동을 하는 단체, 학생운동조직, 노동운동단체 등이 이적단체로 처벌받아 왔다. 그리하여 1965. 인민혁명당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1996. 9. 까지 무려 54개 단체 내지 조직이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

30년동안,

이적단체, 대법원,

특히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이미 오래 전에 조직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나아가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까지 과거에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처벌하고 있다. 이는 군부독재가 끝난 후 공무원 인원 감축 및 낡은 관행

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 등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염려한 공안수사 기구에 종사하는 수사관들이 무리한 실적 올리기식으로, 각 대공분실끼리 경쟁때문에 결국 자기 생존의 논리에 따라 무작위적인 인신구속을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는 1998년,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의 연합조직인 제6기 한총련을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량으로 구속하였다. 그리하여 1998. 2.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1년 동안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원은 무려 182명에 이른다. 이는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하고 있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 (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인정하여 왔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장적 인식까지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라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적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적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판결 등)

이에 1974. 1. 1.부터 1995. 12. 31.까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기소를 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표현물 중, 도서는 1,072종, 그외의 유인물은 1,584종에 이른다.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에는 마르크스의 저서, 엥겔스의 저서, 레닌의 저서가 거의 전부 포함되며, 나아가 북한에서 출판된 주체사상에 관한 서적은 물론 단순한 문학작품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반정부적 성향을 갖는 학생운동조직과 노동운동단체가 제작한 각종 유인물들이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심지어 대학교수가 집필한 대학교재에 대하여도 이적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1994년에는 경상대학교 장상환등 9인의 교수가 공동집필한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교수 2인을 불구속기소하였고, 1997년에는 박지동교수가 저술한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동교수를 구속하였다.

이적표현물 조항은 도서, 유인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에 게재한 글까지도 미친다. 컴퓨터 통신이 활성화함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자신의 의견을 싣고 또한 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들 중에는 사회주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싣거나 사회

주의 서적에서 일부를 전재하여 싣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정부당국은 이들에 대하여도 탄압을 가하였다.

1993. 12. 7.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우리사상'이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던 사노맹을 옹호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씨가 구속되어 1994. 5.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1995. 9. 30. 컴퓨터 통신에 김일성 주석사망 애도 문건을 올린 김태성씨를 구속하였고, 1996. 10. 31. PC 통신을 통해 강릉 무장간첩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윤석진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하영준씨는 PC통신 하이텔 '인터넷내셔널' 동호회 게시판, 자료실 등에 1997년 6월경부터 「Race and Class」(민족과 계급, 켈리니코스 지음), 「광란의 자본주의」(크리스 하먼 저, 책갈피 출판사) 등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영문 또는 요약하여 게시하였는데, 1998년 4월 13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7조 1항),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7조 5항) 혐의로 구속되었고 1, 2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Race and Class」의 저자 Alex Callinicos(영국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는 97년 3월 35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초청으로 고려대 대강당에서 강연을 한 바 있으며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캘리니코스와 크리스 하먼의 저서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말로 번역되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저서나 논문을 읽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은 예술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1997. 11. 4.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씨(49세, 인권운동사방 대표)를 국가보안법 제7조등의 위반혐의로 체포하였고, 검찰은 11. 28. 동인을 기소하였다.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은 동인이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1940년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있었던 좌익과 우익과의 대립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다룬 영화인 <레드 헌트>를 상영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드 헌트>는 그 당시 김대중, 이희창씨등 대선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제2회 부산 국제영화제(1997. 10. 10. - 10. 18.)에 출품, 상영되었으며, 그 상영을 위하여 이미 사전심의까지 받았던 작품이었다. 이미 공개적으로 심의, 상영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영화로서 어떠한 사상적 편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영화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극히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은 1994. 2. 21. 밤부터 22.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등 3인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희망새가 1994년 전국순회공연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24. 17:30경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노래극단 희망새의 단원등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6. 15.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희망새의 단원 3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아울러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6. 29. "김씨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가요등을 소개하려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희망새 대표 김태일에 및 단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특히 이적표현물조항이 심각하게 남용되는 예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반국가단체 내지 이적단체구성, 가입등 소위 조직사건의 혐의로 구속, 조사를 하다가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제작 내지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합으로써 이적표현물 관련조항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5. 11. 15.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다. 박충렬씨의 경우 구속영장기재 혐의사실은 “1989. 일자불상경장소 불상 모다방에서성명불상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내용불상 교육과 지령을 받고내용불상의 보고를 했다.”는 식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이후 박씨는 연행된 후 22일 동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하루 1시간 정도 수면시간 허용), 세워놓기, 무자비한 구타 등의 고문을 받으며 노동당 입당, 간첩활동사실 및 공작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받았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은 사용하던 무전기를 찾아내라면서 관악산, 마석 모란공원, 장소불상의 곳 등으로 3일간 끌고 다니며 추운 날씨에 웃옷을 벗긴 채 무수한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고문을 끓이기고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12. 6.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30일 동안(일요일 제외) 매일 아침부터 밤 11시 넘어서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조사를 했음에도 박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회합,통신 혐의를 제외하고, 박씨가 주체사상을 학습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인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검찰이 위 자료집 중 이적성이 있다고 한 내용은 “우리 사회는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신식민지로서 자본주의적 내적 모순이 심화되어 있는 사회이고, 김영삼 대통령의 정권은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친미예속독재 정권이다.”라고 규정하는 내용,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과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철폐, 재벌해체, 주한미군 철수, 군비축소, 한미행정협정과 한미방위조약의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중이 연합전선적 통일전선체를 구성 대동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은 우선 박씨가 주체사상을 학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또한 위 자료집 배포행위에 관해서도 이적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8조 회합,통신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 조항 역시 반국가단체의 이익, 지령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 가는 지금 남북교류협력법과 서로 충돌되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6. 10. 1.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이 김인서씨 등 미전향장기 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전화, 팩스, 우편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본부 대표 김병연씨에게 국내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혐의로 구속하였다. 진관스님은 재판과정에서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엣 장기수송 환을 위해 일하던 과정에서 홍보차 전달한 것이지 이적목적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유죄로 인정되었다.

제10조 불고지죄

국가보안법의 죄(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규약18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친한 친구, 가족이나 친척의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인륜마저 저버리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위반자인지 전혀 모른 채 만났더라도 그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불고지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게 되며,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위반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게 될 소지가 있다.

1995. 11. 7. 서울지방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무위원인 허인희씨(31. 전고려대 총학생회장)가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구속직후 허씨는 김동식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강변했으나, 검찰은 허씨를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위 김동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1996. 2. 8. 선고 95고단10657), 2심에서는 허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한국의 경우 경찰과 검사는 범죄의 피의자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각각 10일간 구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다시 10일간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기소전에 합법적으로 30일간 구속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경찰과 검사가 10일간 구속기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총 50일간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2. 4. 14.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1992. 4. 14. 90헌마82)

그러나 위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구성,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 통신, 회합, 제9조 편의제공행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규정 역시 규약제26조의 평등의 원칙, 규약 제14조 제2항 및 제3항(g)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인권반박보고서

(여성, 아동의 권리)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1. 정부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6. 12. 30.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 제시 후 2개월만에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정된 법으로서 대부분 선언적 조항으로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여성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1998년 여성정책관련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의 0.23%에 불과하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2.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근로안정을 위한 육아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3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취업모의 0-5세아동은 177만 4천명이고 그중 보육대상아동은 100만명인데 1994. 6. 기준으로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은 207,233명으로 보육대상아동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저소득층아동(생활보호, 의료부조대상)에게는 보육료 전액,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생활보호대상자 중 보육필요아동은 3만명인데 정부필요예산은 1만명에 대한 지원금만 책정되어 있

는 등 보육료지원대상규모가 매우 낮다. 특히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영아와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호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3. 이처럼 여성들이 육아기에 경제활동 참가를 중단하는 경향이 높아 여성노동자의 근속연수는 평균 3.8년으로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1995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52.5%에 불과하여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고급관리직, 전문직, 행정직의 여성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1994년 한국 50대 대기업이 채용한 대졸사원 중 여대생 비율이 8.6%, 공기업은 1.2%라는 통계는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단순노동과 저임금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육아기 이후 재취업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제조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며, 퇴직전 경력이나 직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단순직으로 채용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 취업자의 62.7%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시간제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93년에는 64.9%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속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특히 1997년 말 경기침체와 IMF 구제금융 도입이후 정리해고가 급증하면서 여성실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8. 7. 기준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1997.에 비해 16.6%감소하였으나 남성은 6.3%증가하였는데 이는 IMF이후 여성의 일자리를 남성이 대체하였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특히 많은 실직 여성근로자들이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남자보다 적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발령, 대기발령 등 부당대우를 통해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 일괄사표제출 후 선별수리를 통해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고용행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동일회사에 부부가 근무하거나, 기혼여성의 경우 정리해고 1순위 대상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였고,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 역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즉 남성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5. 1994년 여성단체는 채용에 있어 용모를 조건으로 내세운 44개 대기업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그 중 8개 기업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만 신체적 조건을 고용기준으로 삼은 경우 그러한 신체적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객관. 타당한 근거가 없을 때

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여사원채용방식 때문에 취업을 위한 성형수술을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구제금융 도입 이후 고용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998년에도 철도청에서 여승무원 모집시 모든 수험생에게 반팔상의와 치마를 착용하고 면접시 시험관 앞에서 일정 거리를 걸어보도록 요구하였다가 여성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6. 1994년 통계에 따르면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이고, 정부내 각종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은 7.2%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무원채용시 군대를 제대한 사람에게 주는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1998년 “제대군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이 공무원,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만점의 5%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군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 남성에게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차별로서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경4

7. 1996. 8. 27. 대법원은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보다 5년 낮은 53세로 제한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직원보다 5년 낮은 53세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남녀차별대우금지조항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속한 직급이나 직종에 비교대상이 남자가 있어야만 성차별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무시한 태도이며, 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 김영희씨가 1982년 일반직 55세, 전화교환원 43세의 정년차가 남녀차별이라며 한국통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과 비교하여 볼때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12년의 정년차는 남녀차별이고 5년의 정년차이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매우 부당한 판결로 보인다. 특히 전화교환원은 단순기능업무를 행하는 직업으로 특별한 노동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그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 최초 보고서에 언급된 여행원제도가 폐지된 후 주요은행에서는 일반직, 사무직, 전산직으로 직군을 나누는 신인사제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행실태에서는 남성 100%가 일반직으로, 사무직은 여성이 100%로 여행원제와 내용상 다를바 없는 성차별적 인사제도임이 드러났다. 1997. 2.

11. 대구지하철공사는 원서를 접수한 2명의 여성에 대해 여성을 채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들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제한규정이 엄격해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

부한 사례도 있었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출산을 하였는데 교장이 출산휴가는 1개월이면 충분하니 1개월을 더 희망할 경우 병가신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고용상 남녀의 직무배치가 동등하지 않고 승진에 차별이 있으며, 제도적으로 차별이 없더라도 군사문화의 잔재가 강해 여성의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배치시 희망이나 전공과는 무관한 접대, 보조업무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9. 1998년 서울대학교의 한 여성조교가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성희롱을 범적인 개념으로 인정하고 배상판결을 함께 따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10.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순결, 정조관념에 입각한 완고한 인습과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발생사건의 2%만 드러나고 있다. 한국상폭력상담소의 199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60.9%가 야간보행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의 74.5%가 성기노출, 48.6%가 성희롱, 46.3%가 음란전화, 14.1%가 강간미수, 7.6%가 강간, 6.5%가 어린이성추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2,98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20.4%가 교사의 성적인 언어사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4.2%가 교사가 등이나 엉덩이를 만졌다. 13.9%가 일부러 몸을 밀착시켰다. 7.6%는 유방과 겨드랑이를 만졌다고 대답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근대적이고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편재되어 있고 폭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왜곡된 성의식이 유포되어 있는 까닭에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마음만 먹으면 소유하고 강간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잘못된 의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5조 특수강도강간, 7조 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에 있어 미수범처벌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친족의 범위에 의부를 포함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한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여 간혹발생하는 남성강간피해자는 성추행으로밖에는 인정되지 않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1996. 6. 12.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의 성은 염색체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적기준을 제시하여 성

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2. 1996. 8. 30.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이 개최한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였던 학생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온갖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회내무위원회에서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무산되었으며, 피해자 7명과 여성단체에서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해 성폭력범죄가 저질러진 매우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한국 사회에는 가부장적 유교이념의 영향으로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가장이 다스려야 하고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을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의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처럼 공사를 구분하는 이중적인 가정관은 가정폭력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놓으며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가정폭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3년 보건복지부조사통계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포함한 학대를 당한 여성은 조사대상자 7,500명중 61%,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자는 30.2%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사건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문제는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관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1996년에는 딸과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사건, 딸과 처제를 상습성폭행하고 자신을 상습성폭행한 남편을 살해한 임순란씨 사건 등 끔직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 1997. 12. 17. 가정폭력범죄의 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1998.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위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법원, 수사기관 종사자 등에게 위 법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 일본군대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하여 199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동경지검에 국제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일본국내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고 피고소인이 불분명하며 전쟁범죄의 사실여부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거부되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을 조성하여 정부에 의한 배상이 아닌 민간에 의한 모금

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1997. 1. 위안부 할머니 7명에게 위로금을 비밀리에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정부에서는 위안부할머니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본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8. 4. 27. 군대위안부, 근로정신대 출신 한국인 여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암마구치지법 시모노세키지부는 일본정부에서 위자료로 9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15.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후보는 전체의 1.6%에 불과하였으나, 선거결과 여성의원 비율이 0.9%에서 2.2%로 두배 증가하였다. 또 1996년 실시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출마자의 1.4%가 여성이었는데 그중 2명이 당선되었고 전국구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여성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국회의원의 3%에 불과한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선거구제도가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경쟁이 치열하여 여성에게 불리하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정치분야를 남성고유영역으로 취급하는 남성우월주의사상이 지배하고 있으며, 정당의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부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 공천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여성계의 요구가 높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지원계획, 교육, 훈련프로그램, 선거지원활동, 선거제도 등의 개선정책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6. 1995년 이후 성비는 갈수록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1993년 통계에 따르면 첫 번째 아이의 성비는 106:100, 두번째 아이는 113:100, 세 번째 아이는 195:100으로 나타나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여준다. 성감별을 통해 아들을 골라낳는 인위적 출산의 결과 연간 2만 9천 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건수는 연간 58,750건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유교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법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는 사고는 가족법상 호주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개정가족법은 많은 부분에서 호주의 권리와 제한하였으나 여전히 상징적이고 강력한 호주의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 호주제는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집안으로 편입을 강제하는 부가입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호주의 승계순위는 아들,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구성되어 여성은 남자가 없을때나 남자가 승계를 포기한때에만 호주승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감정이 내포된 제

도이며, 결혼한 여성이 남편 집의 구조에 편입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한다.
- 2.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범적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 14조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개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7.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에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이는 그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과 다름없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다.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범소년이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표에 등재되고 있다. 또 소년법은 소년에 대하여 불구속수사 및 분리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들은 사고력과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여 변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소된 후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의 소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치소 등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성인범죄자들과 함께 수용되는 사

례도 빈번하다.

18. 소년법 제52조 제1항은 소년부송처결정이 있는 경우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의 경우 24시간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위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의 효력만기일에 소년부송처결정을 하는 경우,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는 그날 즉시 소년부로 송치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기간이 지난 그 다음날 소년부에 인도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19. 교육부가 1995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 3700건이던 학교폭력이 1991년 4,300건, 1992년 5,200건, 1994년 5,3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내 폭력사건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검찰에서는 1995년 학교담당검사제도를 실시하여 학교로부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통보받아 사전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을 수사기관의 감시와 선도의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징계, 퇴학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을 선도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이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20. 한국은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가입하였고 1995.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1996. 1.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자국 어린이, 청소년에게 알라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점,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받았고 어린이 청소년전문가집단에 대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실현할 것과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과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이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21.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르면 아동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의 목표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존중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또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이라는 목표에 따라 교육을 받을 뿐이다. 한겨레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아동이 79.6%나 되었고,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41.7%가 놀고싶다고 대답하였으며, 가장 큰고민은 시험성적이라는 대답이 5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혹한 입시경쟁교육으로 경쟁에서 나오되는 청소년들이 비행과 탈선,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부와 한국청소년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음주경험은 46.6%, 본드와 가스를 마신 경험은 각각 1.5%, 2.2%인데 이는 음주, 흡연을 부추기는 대중매체, 광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에서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어른에 종속적인 일부로 취급당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과중한 학업부담에 시달리며 교통사고나 불량한 주위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2.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매우 심각하다. 1991년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13세이하 어린이가 10.2%나 된다. 또한 아동대상의 범죄 살인, 강간, 폭력 등의 사건이 1993년 한해에만 1,539건이 발생하였다. 1995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30%가 아동이며 그 중 30%는 근친상간으로 나타났다. 1996. 5.에는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1996. 7.에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연로한 10대 소녀들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23. 한국 사회는 사랑의 매, 훈육의 미명 하게 아동체벌을 당연시 여기는 전통이 있어 아동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연구소에서 국민학교 1,0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7%가 가정에서 매를 맞은 적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심하게 구타당한 어린이가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학대, 구타당하는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교에서도 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1995. 2. 11. 체육교사가 훈련중 이탈한 14세 유도부원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채워 기숙사에 감금한 사례도 있었다.

24. 1993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 433만6천명 중 취업모를 가진 아동은 7-80만명이고 유치원생은 45만명이다. 이들은 취업모의 귀가시간까지 교통사고 화재등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1996년부터 방과후아동보호시설 2천개를 신설하고 72,000명의 아동방과후지도를 내용으로 한 방과후 아동보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추진상황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결식아동과 소년가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결식아동에게는 1회 1,500원을, 소년가장에게는 매월 8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25. 한국사회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영향으로 입양이 매우 적고 비밀입양이 대부분이다. 특히 장애아 국내입양은 0.12%에 불과하나 정부에서는 장애아입양촉진 조치로서 월 10만원의 양육보조수당과 연 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양자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가 있을 때 입양기관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나 입양어린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자료를 입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양자의 알 권리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초보고서에 언급된 국적법이 개정되어 부계혈통주의가 폐지되고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로 인하여 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의 국적을 가진 경우 그 자녀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게 되고,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그 자식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었던 성차별 규정이 개정된 것은 남녀평등이라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생명권:Article 6

1.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분만후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낙태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So as to protect both the lives of the unborn and those of children after birth, Chapter XXVII of the Criminal Code prescribes a penalty for crimes of abortion. However, Article 14 of the Mother-Child Health Act provides for exceptions on abortion)”(제52항)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이 표방되면서 사실상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이 사문화되어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낙태죄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거의 죄의식없이 낙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1년에 100만건 이상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증거증명수칙

2.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범죄행위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처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자의적인 총기사용에 의한 생명박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The use of firearms is severely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the potential deprivation of lives by arbitrary use of weapons by police officers)”(제54항)라고 하고 있으나 경찰의 총기사용이 허용된 이후 집회, 시위의 현장이나 범인검거 상황에서 끊임없이 총기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1997. 3. 18. 21:02 서울 주택가 골목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달아나던 20대 남자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졌다. 1996. 11. 21.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던 유모씨가 경찰이 쏜 실탄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하였다. 1996. 9. 10. 01:00 서울에서 폭주족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길가던 문모군의 관자놀이에 공포탄을 쏘아 한편이 문군의 왼쪽 눈앞에 박혀 10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고 얼굴에 2도화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총기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오히려 총기사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관이 좀더 쉽게 총기를 사용하면서 불법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공권력 도전행위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업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전달함으로써 총기사고를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정부보고서는 “1990.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수뢰죄, 관세포탈죄 등 15개 조항에서 사형을 폐지하였고, 1995. 12. 29. 공포된 개정형법에서는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흔독치사상죄, 강도치사죄 등 5개 조문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다.(The Act Concerning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ed Crimes and the Act Conceding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ed Economic Crimes were revised on 31 December 1990 to remove the death penalty from 15 clauses including crimes of bribery, evasion of customs duties, etc. The revised Criminal Code, promulgated on 29 December 1995, has seen the deletion of the death penalty from five clauses, inter alia, inundation to residential structures leading to death or injury, obstruction of public traffic causing death or injury, obstruction of the use of public drinking water causing death or injury, and death resulting from robbery)”(제56항)라고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형법은 내란죄, 간첩죄와 살인죄를 비롯한 모두 15개 조문에서, 군형법은 모두 45개 조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모두 50개 이상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특정 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형법에서 여전히 사형을 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93조 범죄를 비롯하여 군형법은 모두 13개 조문에서 법정형을 오직 사형으로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을 광범위하게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제도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규약 제6조 2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기단생명에 관한 위험』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사형 폐지분과위원회는 1994. 4. 4. 대통령에게 사형제도 폐지와 특히 부활절 이후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하는 탄원서를 보냈으며 1994. 4. 18.에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464명의 서명과 사형제도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규정된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94. 4. 1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신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에 대하여는 1994. 5. 4.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만 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1994. 5. 현재 국내의 사형수는 50명으로 나타나 있다. 1994. 10. 6. 정부는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조현철(35세)씨 등 사형수 1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흉악범죄의 근절은 극형이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을 통해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정부가 최근 사회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유로 범죄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형집행을 실시한 것”이라 평가하였다.

정부는 1995. 11. 2. ‘지존파’ 조직원 김기환 등 6명을 포함한 사형수 19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그 뒤 1997. 12. 30.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등 여러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형수 1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7. 정부는 1997년 그동안 반정부활동을 하여왔던 한국대학생총연합회를 왜해시키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강경진압하고 수배자를 무리하게 검거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과 전투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의 간부가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1997. 3. 20. 13:55 광주 조선대 정문 앞 대학생시위 현장에서 조선대생 류재을(20)씨가 갑자기 쓰러져 학생들에 의해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5:10분께 숨졌다.

1997. 9. 16에는 수배를 받아오던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27)씨가 0:10쯤 광주시 북구 매곡동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경찰을 피해 베란다 밖으로 달아나다 추락해 숨졌다.

1997. 2. 2. 용인시 신갈철거민대책위원회 조직부장 민병일(40)씨가 용인경찰서 신갈파출소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폭행당해 남수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1997. 7. 25. 전농3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18미터 높이 철탑망루에 올라가 농성을 하던 박순덕씨가 철거용역원들이 지른 불길을 피하여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있던 중 7. 26. 경희대의료원에서 사망하였다.

8.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사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사인에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의문사가 있었다.

1994. 10. 31. 00:10경 안동교도소 경비교도대 6내무반 소속 이교 최태호씨가 배속된지 16일만에 사망하였고 가족들은 사체에서 피멍자국이 있었던 점, 교도소에서 처음에는 군화끈으로 목을 맸다고 하였으나 포승줄이었던 점, 교도소 측에서 목격자 등 관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취재진의 접근을 막은 점 등을 들어 구타에 의한 타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11. 18. 있었던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재부검 결과 1차 부검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측두부 피하출혈과 가슴부분의 타박상 등이 새로이 발견되었다.